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조보 (2)

(9월호에 이어)

5. 조보의 발행 시기

『효종실록』에 보면, “조보를 연일 보건대,”라는 기사가, 『현종실록』에는 “날마다 양사가 논한 사실이 조보에 기재되어,”라는 기사가 있다. 실록의 기사대로라면 조보가 매일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발행 시간은 오전이었다. 여기에는 전날 저녁부터 밤 사이 임금의 명령과 당일 아침의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저녁에 발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제호는 붙어 있지 않으며, 기사의 제목도 없다. 다만 각 부분의 첫 머리에 날짜가 쓰여 있고, 각 기사들은 사건의 처리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조보의 발행 목적은 군주와 조정의 공식 행정 사항을 알리는 것이었다. 따라서 왕실 및 중앙 관서의 경우는 기별군사를 통하여 즉시 전달되었다. 그러나 관직에 제수된 사람이 그 사실도 모르고 낙향하거나, 지방 및 하부 관청에서는 몇 일분씩 모아서 역참 또는 경주인을 통하여 배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보의 즉시성이 떨어지고 정부의 공시 사항이나 지시, 전달 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종이가 부족하였던 이유도 있지만, 조보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였거나, 전달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였던 현실적 한계 때문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발’과 같은 속보의 형태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하였다.

6. 읽기 어려운 글씨와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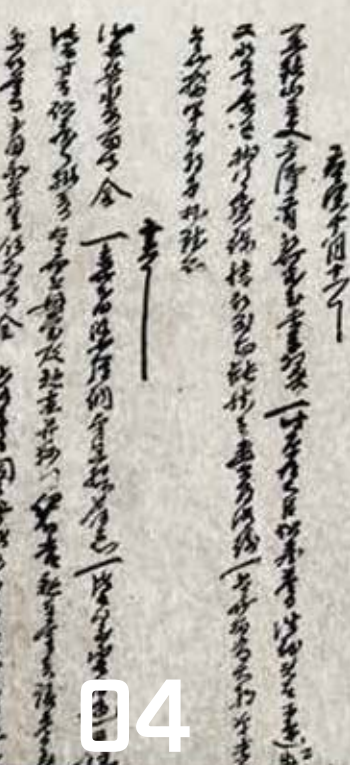
조보는 인쇄에 의해서 대량 생산된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소속된 기별서리들이 승정원에서 와서 붓으로 작성해 간 필사본의 형태였다. 조선시대 공문서가 한자로 작성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자를 주로 쓰되,

이두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서체는 매우 독특하여 기별 글씨라 불리는 흘림체였다. 일반적으로 이를 ‘기별초’ 혹은 ‘조보체’라고 하였다. 매우 거칠게 썼기 때문에, 초서체의 다른 고문서보다도 훨씬 알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조보를 베껴 쓰는 서리에게는 정확한 필체가 요구되었고, 이와 더불어 집중력과 순발력을 필요로 하였다. 임무가 막중하고 일정한 우대가 주어질 만큼 근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엄중한 문책도 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문책은 필체를 잘못 썼을 경우에 받았던 탄핵이었다.

그러나 모든 조보가 흘림체로 쓰인 것만은 아니었고, 특별한 경우에는 정서되기도 하였다. 국가 문서를 보존하는 왕실도서관인 규장각에서는 조보를 정서하는 기별서리 3인이 배치되었고, 이들로 하여금 보존용 ‘정서조보’를 만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자나 세손의 교육기관(시강원과 강서원)에도 정서 기별서리가 있어서 정서조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보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1890년 조선 주재 프랑스 공사관의 서기관 겸 통역관으로 1년 10개월 여 근무했던 모리스 꾸랑은 자신의 저서인 『한국서지』에 다음과 같이 조보를 설명했다.

“한경보(漢京報), 조보(朝報) 또는 기별(奇別)이라고 한다. (가)폭은 35cm, 길이가 일정치 않은 낱장의 종이에 초서체로 쓰여졌다. (나)국왕 측근에 상주하는 관리가 왕의 명령을 기록하여 궁내에 있는 승정원에 보낸다. 그러면 (다)각 관청 및 고위 관리들이 파견한 서리들이 승정원 서리에게 (라)구독료를 지불한 후 왕실 관리가 가져온 기사가 도착하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필사한다. (마)각 관청과 고위 관리들은 원본을 가지며 승정원 서리가 만든 사본(寫本)



<원본 조보>

은 그 밖의 관리들과 한 달에 한 꾸러미 반을 조보(抄)구독료를 지불한 민간인들에게 계속 배달하는 기별군사에게 넘겨준다.”

(가)부분은 조보 형태에 대한 표현이다. 폭이 35cm 내외이고, 길이는 일정치 않다고 하였는데, 현존하는 대부분의 조보 형태와 일치한다. (나)·(다)·(라)부분은 국왕 측근 신하가 기사를 작성하여 승정원에 보내면, 각 관청과 대신이 보낸 서리들이 베껴 갔고, 일정한 구독료를 냈다는 표현이다. 측근 신하라는 표현은 조보를 작성하였던 주서를 의미한다. ‘왕의 명령’이란 각종 상소나 인사 관련 사항 중 왕이 답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구독료를 냈다는 (라)의 표현은, 1894년 갑오경장 당시 승정원이 승선방으로 개칭되면서, 승선방의 관보국에서 ‘조보’대신 발행한 ‘관보’를 말한 것이다. 즉 관보와 조보를 혼동한 것으로 이해된다.

7. 어떤 내용이 수록되었을까?

조보는 일종의 관보 기능을 가지고 국왕의 조칙을 비롯하여 관리의 건의에 대한 대답, 관리의 임명과 면직 등의 인사 내용과 지방관의 보고 등 다양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유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자연 재해 기사 역시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① 국왕의 명령과 지시를 포함하는 전교, ② 국왕의 동정, 건강 상태, 경연, 기타 국가 행사, 예컨대 과거, 때로는 관리의 사망 사실, ③ 국왕의 비답, ④ 국왕이 관민에게 내리는 회유문인 윤음(綸音), ⑤ 관리의 임명과 면직, 이동, 승급 등 모든 인사 관계 내용, ⑥ 자연 재해 및 기이한 사실, ⑦ 당면 정책 및 중요 문제에 대한 유생과 관료들의 건의인 소장, 그리고 중앙 및 각 지방에서 왕에게 올리는 각종의 보고서와 장계의 내용 등이다.

한편 임금에 직접 본 상소는 수록되었으나, 살펴보지 않은 상소는 제외되었다. 군주의 동정과 건강 여부, 세자빈의 간택 날짜, 반역 도모 사실, 죄인의 추국 내용, 조정의 정령, 관료의 휴가 등도 수록되었다. 관리의 범죄 처리 사실은 물론, 유배자의 해배 소식도 있다. 즉 조보는 하루 동안의 국정 시행 사실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 실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8. 조보는 파직된 관료들의 필독서

조보의 배포 범위는 광범하였으나, 이용은 일반 백성보다 중앙의 관청과 전·현직 관리, 그리고 사대부 등 지배층에 한정되어 있었다. 조보체라는 독특한 필체의 한문으로 필사되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읽자 하여도 읽을 수 없었으며, 조보를 볼 정도의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그리고 지배층의 입장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지배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필사·반포하였기 때문에, 정보를 독점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조보의 열람은 지방보다 중앙에서 쉽게 할 수 있었으며, 관리들 상호간에 돌려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반 백성들도 조보를 본 적이 있었다. 선조 29년 전란 중에 민심의 동요를 막을 목적으로 적의 동향을 적은 황신(黃愼)의 서장을 조보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 조치는 정국의 긴급한 상황을 민간에 알림으로써 민정을 안정시킬 의도로 민간에 유포시킨 사례이다. 이 경우 한문보다는 언문으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광해군일기』의 편찬 시 일반이 소장하고 있는 조보나 장주(章奏)를 수집하였다는 인조 11년의 기사를 통해서도, 민간 사회에 조보가 유포되었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즉 조보가 대중 매체로서의 기능도 일부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관료들은 눈과 귀를 조정의 동향에 맞추고 군주의 동정은 물론, 모든 시행사의 향방에 주목하였다. 잘못을 저질러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된 사람은 조정의 동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컸다. 인사 내용이라든가, 자신이 근무했던 부서의 동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혹시 자신의 사면이라든가 관직 제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인가에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다. 인사 내용을 비롯한 조정의 시행사에 따라 자신의 거취가 좌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광해군 10년에는 의금부에 구속된 죄수가 조보와 분발을 받아보야 해당 도사 및 수직 하리 등이 벌 받고, 파수별장과 선전관, 포도군관 등도 파직된 일이 있었다.

조보의 기사가 현직 관리는 물론, 파직되었거나 심지어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일수록 조보에 실린 조정의 동향과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정황은 조보가 오늘날의 신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